인권정보자료실
CPb1.104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멈출 수 없다."

조사 권한강화 기간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공청회

• 일시 : 2002년 8월 30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02-392-7504)
주관 :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 민주노총 · 추모연대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멈출 수 없다

CPb1.104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멈출 수 없다."

조사 권한강화 기간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공청회

• 일시 : 2002년 8월 30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02-392-7504)

주관 :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
민주노총 · 추모연대

〈자료집 순서〉

발제1〉 현재 당면한 위원회의 한계와 진상규명을 위한 조건 (한상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2
발제2〉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의문사 유가족의 입장 (허영춘,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 10
발제3〉 중단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3차 법개정 방향 : 법개정안 (이덕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16
토론문1〉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과 과거청산 (천영세, 민주노동당 부대표) … 49
토론문2〉 노동자 입장에서 보는 의문사 진상규명 투쟁 (유덕상,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53
첨부자료 1〉 의문사 진상규명 경과 보고 … 63
첨부자료 2〉 철저한 의문사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성명서 모음 … 67
첨부자료 3〉 언론보도로 살펴본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이유 … 82

식 순

개 회 — *인사말*

공청회

사회 : 김삼웅 (성균관대학교 교수)

발제 1 …… **현재 당면한 위원회의 한계와 진상규명을 위한 조건**

(**한상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발제 2 ……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의문사 유가족의 입장**

(허영춘,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발제 3 …… **중단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3차 법개정 방향 : 법개정안**

(**이덕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토 론 …… 이창복 (민주당 의원)
김원웅 (한나라당 의원)
천영세 (민주노동당 부대표)
황인성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김석연 (민주화을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
유덕상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폐 회 — *유가족인사*

발 제 · 1

의문사 진상규명의 현황과 문제점

한상범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1. 법개정 논의의 배경과 경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조사활동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권한강화와 기한연장의 법개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현재 위원회의 조사 진행상황으로는 모든 사건을 기한 내에 조사종결 할 수 없다는 점이며, 둘째는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미결로 미루어 방치하는 것은 특별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위원장인 저는 지난 2002년 8월 7일에 조사시한 종료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를 대통령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법개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2. 한시법 제약성 문제와 사망자 처우문제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가 2000년 10월에 설립되었을 당시에 조사기한을 9개월로 예정하였습니다. 그 후 9개월로 조사종결이 불가능한 사정이 명백해져서 2001년 및 2002년 두 차례 개정하여 6개월씩 1년을 연장하였고 이제 그 시한종료가 불과 보름 앞으로 임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1년 9개월 안에 83건의 의문사 사건을 조사처리 하라는 것인데, 상당히 무리한 주문입니다.

또한, 특별법에 따르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이 위법한 공권력의 직 · 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있다고 입증되어야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분명한 국가불법행위의 요건이 있어도 기각 처리되어 국가배상법상의 시효에 걸린 사망자의 유족들은 현행법 하에선 국가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책임있는 보상조치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3. 위원회 조사권 보강 필요성

(1) 조사권 강화와 위증 처벌 등 보강

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참고인 또는 피진정인에 대하여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출석요구 불응자에 대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는데, 특별법상 조사 불응자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행정벌) 1천 만원 이하 부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조사에 불응하고 위증을 해도 속수 무책인 실정입니다.

(2) 관계기관의 협조문제

정보공안기관의 협조가 벽에 부딪히고 있고, 현행법상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외에 다른 대응책이 없는 점은 다시 지적할 것도 없습니다. 공권력의 불법성으로 인한 사망 사건의 조사인데, 기밀 운운하며 조사에 불응하고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일을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3) 처벌규정의 강화

특별법의 처벌규정을 보강하고, 위원회 활동에 방해나 장애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까지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4. 반인륜 범죄 공소시효 예외 인정

현행법상 살인죄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사건들은 60년대 후반 권위주의 정권하의 탄압과정에서 발생한 것들이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범행이 밝혀져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미흡은 국민의 법감정이나 정의감을 해칠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조사활동에도 경시적인 태도로 나오게 되는 원인도 됩니다. 위원회가 내린 조사결정의 실질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종이 호랑이」로 보면서 시한이 끝나서 위원회가 해체되길 바랄 뿐만 아니라, 위원회 활동 중에도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일부 작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5. 조사결정에 대한 재심 제도의 필요성

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각되거나 진상규명 불능결정이 났어도 사후에 새로운 증거나 증인, 기타 진상규명에 도움될 사실이 나타났을 경우에 재심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제도가 있듯이 하자가 발견된 결정에 대한 시정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만 고인과 유족의 한을 풀어주고 민주화를 위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는 성실한 노력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6. 권위주의 정권잔재 청산과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의 치부를 청산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청산 작업은 권위주의하에서 형성된 악법과 이 악법으로부터 파생된 잘못된 판결들과 결정, 관행과 조치 등을 정부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물리적·제도적인 청산뿐 만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의 탄압과정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인적 청산문제가 그대로 방치된 채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의문사진상규명 과정에 의문사와 깊숙이 관련된 구시대의 인물이 건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사과·사죄와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넘어간다면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과제의 해결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의문사를 규명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의적, 정치적 및 법률적 책임이 있는 문제를 그대로 놔둔 채 "청산"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나는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참고 자료〉

1. 진상규명 조사 추진상황

□ 진정접수 및 조사개시 결정

○ 진정접수('01. 12. 31까지) : 80건

- 피진정 기관별 : 국정원 10, 경찰 26, 군 30, 기타 14
- 발생 시기별 : 70년대 15, 80년대 51, 90년대 14

○ 조사개시 결정 : 83건

- 접수된 진정사건 중 2건은 진정요건이 맞지 않아 각하, 78건 조사 결정
- 「삼청교대」, 「인혁당」사건 등 시대별 상징적 사건 직권조사 결정(5건)

□ 조사 상황

○ 조사종결 : 30건(36%) ※ 기각 20, 인정 6, 취하 1, 불능 3

- 인정사건 : 최종길, 임기윤, 박영두, 한희철, 김준배, 오범근

○ 조 사 중 : 53건(64%)

- 26건은 조사 보고완료, 12건은 보강조사중, 15건 미보고

◀ 활 동 시 한 ▶

◈ 조 사 기 한 : '02. 9. 16

◈ 위 원 임 기 : '00. 10 17 ~ '02. 10. 16(임기 2년)

◈ 대통령 보고 : '02. 10. 16한(조사종료후 1개월내)

◈ 보고서 발간 : '03. 3. 16한(대통령 보고후 5개월이내)

2. 인용사건 개요 및 위원회 결정내용

연번	사건명	사건개요	진 정 취 지 (직권조사 개시취지)	위 원 회 결정내용	비 고
1	제81호 박영두사건 (조사개시) 2001. 1.13	○청송교도소 수감중 1984.10.14 7사하에서 사망	○1979.10월 부마소요 사태시 시위 참가 ○고문과 구타로 사망하였음을 심장마비사로 처리	○위법한 공권력개입으로 인한 죽음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심의요청('01. 7.24)**	인정 (2001. 6.23) (특조과)
2	제47호 임기윤사건 (조사개시) 2001. 1.13	○국군보안사령부 출두한 후 조사 받던 중 ○혼수상태로 부산국군통합 병원에 후송 치료중 사망	○구타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 의혹	○민주화운동 과정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 인정 **-단,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 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아니하기로 함 (기 구제조치)**	인정 (2001. 9.28) (조사3과)

연번	사건명	사건개요	진 정 취 지 (직권조사 개시취지)	위 원 회 결정내용	비 고
3	제 7호 최종길사건 (조사개시) 2000.11.3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과 관련, 1973년 10월 16일 중앙정보부 남산분청사에 임의출두 조사받던 중 ○같은 달 19일 동 중앙정보부 건물 앞에서체 변사체로 발견됨	○유럽거점 대규모 첩단 사건은 조작되었고, 투신자살 동기 등 각종 정황상 설득력이 없으며 ○중앙정보부의 불법적인 고문에 의한 사망의혹이 제기됨	○민주화운동 과정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최종길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금 심의요청**	인정 (2002. 5.24) (조사1과)
4	제53호 한희철사건 (조사개시) 2001. 1.20	○'82년 12월 1일 군입대, 육군 제5사단 본부대에 배속된 후 '83년12월11일 04:50경 초소 근무중 실탄 3발에 의한 총상을 입은 변사체로발견됨	○자살할 이유가 없고, 5일간 보안부대 조사받은 다음 날 변사사고 발생 ○보안부대 조사과정시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 의혹 제기됨	○민주화운동 과정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한 희철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금 심의요청**	인정 (2002. 6.21) (조사3과)
5	제22호 김준배사건 (조사개시) 2001.1.13	○'97년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지명수배를 받아 은신중 같은 해 9월 15일경 전남도경 형사기동대의 추적을 받다가 ○광주광역시 북구오치동소재 청암아파트 108호 화단 앞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청암아파트 1308호에서 경찰의 검거를 피하기 위해 베란다를 넘어 케이불(인입선)을 타고 도주하다가 ○4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간우엽 손상 및 다량 실혈로 사고사한 것으로 내사종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김 준배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금 심의요청** ○이영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검찰총장에 고발	인정 (2002. 7. 6) (조사2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의문사 유가족의 입장

더 이상 죽이지 마라

허영춘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장)

1.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며

제 아들이 군에서 죽은 지 1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때 제 나이가 마흔 다섯이었는데 이제 환갑이 넘은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아들의 시신을 보고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네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겠다고. 그렇게 아들과 약속 한 후에 1998년 법 개정을 위해 천막농성 할 때 방송사와 함께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아들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곳으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유골이 있는 곳에 가게되면 집으로 가져가야 하고, 가져가면 묻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잊어버릴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동안 돈을 벌면 아들의 군대 동기들을 찾아다니면서 진실 찾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거짓말이라도 만나서 들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사 가거나 행방을 찾지 못해 만나 보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때에는 참으로 허탈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청와대, 국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수 도 없이 진정과 탄원을 해 왔습니다.

저의 경우는 다른 가족들에 비하면 나은 편에 속합니다. 최우혁의 어머니는 아들이 군대에서 의문사하자 아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군대에 보내 죽게 만들었다는 자책감으로 실어증에 걸리고 급기야는 양화대교 아래로 투신하여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이동의 아버지도 군대에서 아들이 의문사하고 난 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진상규명을 해 오다 대통령과 유가족들에게 진상규명을 꼭 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음독하여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김두황의 어머니는 아들이 녹화사업 과정에서 의문사한 뒤 조그만 증명사진을 보면서 아들의 얼굴을 그리고 또 그리다가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경식의 어머니는 진상규명이 안될 경우에 온 가족이 음독하겠다고 비상을 소지하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억울하게 죽은 자식들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는 반드시 알아야겠다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생업도 포기하고 법 제정 투쟁을 하였습니다.

98년 4월부터 서울역 앞에서의 법 제정 캠페인을 거쳐 국회 앞에서 422일 동안의 천막농성 끝에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70 노구의 노인들이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대답은 자식들을 올바로 키웠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만든 죄?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법무부, 국정원, 기무사 등 공안 기관에서는 법 제정 자

체를 반대했었고,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강력하게 투쟁하여 부득이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자, 조사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법은, 흉내만 내고 끝내도록 처음부터 권한이 약한 채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걸었던 기대와 아쉬움

그럼에도 우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꿈속에서도 바래왔던 진상규명을 속 시원히 해주기를 바래 왔습니다. 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상당 기간동안 우리는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습니다. 조금 잘 못 되어 간다라고 느끼면서도, 그래도 잘 되겠지 하면서 삭여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조사 권한 문제로 인해 진상규명을 하는데 장애가 나타났는데에도 위원회에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데 대해 우리는 급기야 조사 권한 강화와 기간연장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였고, 한동안의 난항을 겪은 후에야 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조사 권한 강화는 되지 않은 채 기간만 몇 개월 연장되고 말았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위원장님과 제1상임위원님, 그리고 비상임위원님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셨지만 조사권한 문제는 더욱 부각이 되었고, 더욱이 이제 보름 정도밖에 조사기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유가족들은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사대상 사건 83건 중 대다수의 사건들이 진상규명에 접근하지도 못한 채 종결되어야만 하는 것을 어찌 눈뜨고 그냥 바라만 볼 수 있겠습니까. 밤에도 잠을 못 이루고, 무슨 일을 해도 손에 일이 잡히지 않고 멍하게 바보처럼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대로 진

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중단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정말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자식들을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식들을 지켜주지도 못하였고, 그리고 왜 죽었는지도 밝혀 주지도 못한 못난 애비 에미가 무슨 면목으로 자식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3. 한 점 의혹도 남아 있지 않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며

얼마 전에 위원회에서 제 자식의 사건에 대해 중간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참으로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식의 사건이 아직도 진상규명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만큼의 진전도 이루지 못한 다른 가족들의 사건을 생각하면 의문사지회장으로서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식의 사건이 밝혀지는 순서를 가장 나중에 되기를 바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만큼이나마 밝혀졌기에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위해 중간 발표를 해 달라'하고 위원회에 거듭 요청하여 중간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하여 다른 가족들의 사건들과 함께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사건들이 위원회에서 인용으로 결정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인용이 된다하여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인용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설사 자살하였다 하여도 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우리가 납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태춘 가수의 '더 이상 죽이지 마라'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이 나라에 다시는 우리 자식들처럼 죽임을 당하는 청년들이 없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와 같은 불행한 어버이들이 없게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건들이 철저히 규명되어 재발되지 않도록 다른 제도나 관행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버이들이 자식들의 병역 기피를 시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대견스럽게 국방의무를 하러 가는 자식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식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인뿐만 아니라 제도와 관행이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식들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들의 지난 고통과 노력들이 개인의 고통으로 치부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촉구 하셨던 위원회의 자문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법 개정을 위해 위원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무부,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 등 공안 기관에 부탁을 드립니다. 의문사 사건들에 대해 피진정기관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회의 조사 활동에 대해 발 벗고 나서서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참회를 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진실과 참회가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길만이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의 제정 목적인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법 개정에서 허울뿐인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아닌 정말 진상규명을 이룰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었다면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게 하여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야 의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과거 청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의문사 진상규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법은 그 제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소한 법 논리에 빠져들지 말고, 정책의 전환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소중히 쓰기 위해서라도 절름발이 법이 아닌 철저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허 일병은 타살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허 일병의 아버지로서 국방부가 민관합동으로 재조사를 한다고 하는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뒤집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가 아니라 위원회의 위상 대문입니다. 지금까지 수 차례의 재조사 과정에서도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국방부로서는 대통령직속기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진상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가 아니라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해야하며, 위원회에서 아직까지 규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적극 협력하여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통수권자의 사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허 일병의 아버지로서 지금 위원회에서 조사중인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최 이병, 노 상병, 이 이병, 김 일병, 임 일병, 박 일병, 남 이병, 박 하사, 정 상병…… 등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갔다가 죽임을 당한 청년들, 그리고 신, 이, 김, 최, 문, 박, 정, 노, 안씨…… 성을 가진 아름다운 청년들, 그리고 장, 양, 김, 손, 최, 변, 김, 박씨…… 성을 가진 어버이들을 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방부 앞에서 오열하고 있는 또 다른 김 일병, 이 이병, 최 상병, 박 병장……들과 그 어버이들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억울한 죽음들이 한 점 의혹이 없어질 때까지 저는 이 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발 제 · 3

중단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3차 법개정 방향 : 법개정안

이덕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보통 글자체는 현행 법률이고, 굵은 글자체는 개정안 시안입니다.

1. 개정안 1

〈가안〉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3차 개정안 (특별검사제)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 또는 신설한다.

1. "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 · 사회적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 · 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3. "진상규명"이라 함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수사활동 일체를 포함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 · 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한다

제3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의문사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3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의문사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 또는 신설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한다

2.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3. 청문회 개최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조 (업무 등) ①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문사 대상자의 선정

2. 의문사한 자에 대한 조사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 제2항의 제2호 및 제5호,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 또는 신설한다.

2. 공인된 대학에서 8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밖에 민주화운동 또는 인권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 · 검사 ·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3. 법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3급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③ 위원 중 3인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1인은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한다.

제5조의 2 (특별검사의 임명) ① 대통령은 의문사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 제5조 제2항 제1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을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에 계류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군사법원법 제37조 제1호의 직무
2. 위원회에 계류된 사건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신청 및 집행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 또는 군사법원상 검찰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선임된 특별검사는 검찰청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의하여 선임된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장비의 제공, 기타 이와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의하여 선임된 특별검사는 이 법에서의 위원회 활동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선임된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의한다.

⑧ 정부는 예비비에서 제1항에 의하여 선임된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의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진정의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한다

⑤ 직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 경우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수는 최소한이어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하고, 위원회의 소속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문사 관련 유족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공무원, 의문사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 (진정인의 적격 등) ① 의문사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의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19조 (진정의 방식)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진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

2. 진정의 취지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제20조의 제1항, 제1항 제1호,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한다

① 위원회는 진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진상규명하지 아니하고 각하하여야 한다.

1. 진정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밝혀진 경우

②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개시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20조 (진정의 각하) ① 위원회는 진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하여야 한다.

1.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과 동조 제1항,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한다.

제21조 (진상규명의 개시) ① 위원회는 진정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진상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문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

제21조 (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진정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문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5항, 제6항,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15항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시설, 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그 소명을 검토하여 이유없다고 인정할 경우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⑩ 제9항의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형사처벌에 처한다는 취

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⑮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서 구인할 수 있으며, 그 집행은 제10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청취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4.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자료나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진정인, 참고인 또는 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시설, 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3항 및 제5항의 경우 당해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동행명령을 함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⑩ 제9항의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⑪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⑫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사무국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⑬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⑭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사무국소속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2조의 2 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한다.

제22조의 2(통화 내역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 통화 내역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의 3 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한다.

제22조의 3(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고인·피진정인·감정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는 형사소송법 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3조 (조사의 기간) 위원회는 조사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를 2002년 9월 16일까지 완료

하여야 한다.

제24조 (진정의 기각)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사실이 아닌 경우
2. 의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실확인·구제조치가 이미 이루어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의 2 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한다.

제24조의2 (진상규명 불능 결정)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이 민주화운동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사회적 탄압과정에서의 발생여부나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에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 위원회의 의견을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진상규명 불능 결정)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나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24조의 3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한다

제24조의 3 (재심 청구 및 추가 진정) ① 진정인은 제24조의 기각 결정과 제24조의 2 진상규명 불능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진정인은 인용으로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추가 진정을 할 수 있다.

③ 재심 및 추가 진정의 절차와 내용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한다.

제25조 (고발 및 수사의뢰)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청하거나 검찰총장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하면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조치가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발 및 수사의뢰와 관련된 진정사건의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제25조 (고발 및 수사의뢰)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

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하면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조치가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발 및 수사의뢰와 관련된 진정사건의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제26조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한다.

제26조(구제조치 등) ① 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본다.

② 이 법에 의하여 민주화운동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사회적 탄압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자 또는 명백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사망하였음이 상당한 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상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③ 위원회는 국가배상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또는 사건 관련자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할 것을 법무부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는 즉시 보전소송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구제조치 등)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결과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한다.

제27조 (결정 등의 통지) 위원회는 제5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소제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각 , 제24-1의 규정에 의한 조사불능 결정, 제24조-3의 규정에 의한 재심 청구 및 추가 진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및 수사의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결정등의 통지) 위원회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공무원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위원·증인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의문사 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증인이나 참고인의 보호, 관련된 증거 또는 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한다

①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마다 진상규명을 종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는 공표하여야 한다.

제30조 (보고 등) ①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대통

령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는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의문사 사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 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의문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③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0조의 2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한다

제30조의2 (조사보고서의 발간)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후 공소 제기 않은 사건의 경우 2월 이내에, 공소 제기 사건의 경우 8월 이내에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고, 매 1년마다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30조의2 (조사보고서의 발간)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보고 후 5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7. 24〕

제31조 (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때부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시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② 위원회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검사 또는 검찰관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하는 경우 그 결정문의 이유에서 실체관계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의 제1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한다.

제32조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위원회는 제5조의 2 제1항에 의한 특별검사 이외에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위원회는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에 있는 경우에는 제2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진정인이 제1항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정신청에 관한 절차의 진행중에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제3항 및 군사법원법 제304조제4항의 재정신청인은 당해 사건의 진정인으로 본다. 〈신설 2001.7.24〉

제33조 (형의 감면) 의문사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34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고 동조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한다

제3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5. 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6.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 및 감정을 한 자
7.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8항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
8. 제22조 제5항,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는 자

제3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 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 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

는 협박한 자

3.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제35조 (벌칙)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벌칙)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 의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한다

제37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8항의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제3자로 하여금 방해하도록 한 자

5.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자.

제37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제8항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

제37조의2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불복절차) 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위원장이 부과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 위원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3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한다

재심청구 및 추가진정 경과조치

이 법이 공포되기 전 결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및 추가 진정은 공포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개정안 2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계류 법안 수정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한다.

1. "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 · 사회적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 · 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 · 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제5조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5호를 신설한다.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2. 공인된 대학에서 8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밖에 민주화운동 또는 인권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3. 법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③ 위원 중 3인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1인은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2조제5항 후단 중 "제출요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를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로 하고,

제22조 (조사의 방법)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시설, 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동조 제6항 중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하며, 위원회는 그 소명을 검토하여 이유없다고 인정할 경우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로 하며,

⑥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동조에 제15항 내지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 통화내역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⑯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서 구인할 수 있으며, 그 집행은 제10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⑰ 위원회는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고인·피진정인에 대한 통화내역 감청,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고인·피진정인·감정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는 형사소송법 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3조 (조사의 기간) 위원회는 조사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를 2002년 9월 16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한다

제24조의3 (재심 청구 및 추가 진정) ① 진정인은 제24조의 기각 결정과 제24조의 2 진상규명 불능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진정인은 위원회에서 인용으로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추가 진정을 할 수 있다.

③ 재심과 추가 진정의 절차와 내용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 제2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한다.

제26조(구제조치 등) ② 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본다.

③ 위원회에서 의문사 사건의 조사 결과 민주화운동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사회적 탄압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구제조치 등)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결과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7조 (결정 등의 통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각, 제24-1의 규정에 의한 조사불능 결정, 제24조-3의 규정에 의한 재심 청구 및 추가 진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한다

①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마다 진상규명을 종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는 공표하여야 한다.

제30조 (보고 등) ①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는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의문사 사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 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의문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③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0조의 2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한다

제30조의2 (조사보고서의 발간)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후 공소 제기 않은 사건 경우 2월 이내에, 공소 제기 사건의 경우 8월 이내에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고, 매 1년마다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30조의2 (조사보고서의 발간)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보고 후 5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31조의 제목을 관련시효의 적용배제 등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수정 또는 신설한다.

제31조 (관련시효의 적용배제 등) ① 위원회의 조사 결과 민주화운동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사회적 탄압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및 민사소송법상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② 위원회는 국가배상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또는 사건 관련자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할 것을 법무부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는 즉시 보전소송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때부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시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제34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고 동조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한다

제3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5. 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6.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 및 감정을 한 자

제37조 의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7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제8항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

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

5.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심청구 및 추가진정 경과조치

이 법이 공포되기 전 결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및 추가 진정은 공포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토 론 문 1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과 과거청산

천영세 (민주노동당 부대표)

유가협 부모님들의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명예회복법, 의문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의 노력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위 두 특별법은 과거청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장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 부패방지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정에는 우리 민주노동당도 심혈을 기울였으나 기성 국회입법과정에서 종이호랑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외 정당으로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시대와 강대국, 미국의 정치군사적 목적

에 의한 국토분단, 극단적이고 강요된 냉전시대, 처절한 민주화 투쟁시기를 겪으며 형식적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과거청산을 하지 못한 불행한 민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과거청산 이야기를 들으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기념관을 우리들 세금으로 짓겠다는 현실에 다다르면 극도의 절망감마저 느낍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친일파 청산, 일본군 위안부, 노근리 등 미군의 양민학살, 장준하 선생 암살사건 등 군사독재정권하에서의 의문사, 삼청교육대, 녹화사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모두 과거 청산, 역사 바로 세우기입니다.

얼마 전 수지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간첩이라고 매도되었던 김옥분씨가 실은 그 남편이었던 윤태식에 의하여 살해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앞장서 납북미수사건으로 조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의 전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로지 군사독재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평범한, 불쌍한 우리의 누이를 간첩으로 몰아세우고 살인범을 내세워 북한을 파렴치한 범죄집단으로 매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장세동 등 관련자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고 합니다. 과거 이근안의 경우에도 그랬지요. 조금만 더 늦게 검거되었다면 아마도 이근안은 지금 대낮에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의문사위원회에 의하여 타살로 밝혀진 허원근 일병 살인사건에서도 살인자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사건에서 소멸시효 이야기가 나오면 답답해 집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국제법고 국제법 원칙이 이 땅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제법은 각 나라에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군인이나 공무원 등 국가기관을 통하여 직접 인권을 침해하거나 방조 또는 묵인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나라가 이러한 인권침해행위의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으면 인권보장의무를 또다시 위반하는 것입니다.

진상규명과 처벌요구권, 배상을 받을 권리는 단순히 "복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나 배상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직접 피해자가 아닌 국민 모두 "진실을 알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 역시 이러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제도개혁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국제법이 요구하는 인권보장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하여, 나라의 인권보장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반인도적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상 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이 이 땅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론만이 아닌 실천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김대중 정부 출범시 언론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언론보도대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결과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한 재심의 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명예회복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사건, 노동사건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여부를 결정하기 못하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사위원회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많은 사건 특히 군 관련 사건에서 진척을 이루지 못한 채 조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우리 민주노동당에서도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위원회에 특별검사를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기간을 한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법과정에서 또 다시 국회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제기할 의원이나 정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문사위원회의 올곧은 활동을 위하여, 그리고 이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라도 특별검사가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부패방지법의 경우에도 홍콩의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두고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주어 실효를 거두도 있습니다. 입법론적으로 특별검사를 두는 것에 아무런 모순도 없습니다. 반대 주장을 하는 정당이나 의원에 대하여 반대논리를 국민 앞에 공개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원 개개인을 공개하고 반대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엄격한 정치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의문사 특별법이 올바르게 개정됨으로써 명예회복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의 올바른 개정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정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가지 씩 바로 잡아나감으로써 우리는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비로소 화해와 평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토 론 문 2

노동자 입장에서 보는 의문사 진상규명 투쟁

유덕상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의문사 진상규명문제는 '사안만 과거사일 뿐 사실상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는 표현은 오늘날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놓고 보면 딱 들어맞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중인 노동자 관련 사건은 모두 9건으로(별첨 참조)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시기에 발생한 것이다. 노동3권은 물론이려니와 노동자의 초보적인 권리인 조합결성조차 인정치 않으려는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노조를 결성하려 하거나 어용노조와 맞서 싸우거나 노동자간의 연대를 모색하려는 노동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엄중한 감시와 가혹한 탄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의문사한 노동열사들이 생겨났다. 현재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들 노동열사 사건들은 모두 10여년 이상

된 과거의 사건들이지만 이들의 의문사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 노동자들은 이를 결코 과거사로만 치부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오늘날 정권과 자본이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양상이나 수준은 더욱 교묘해졌을 뿐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과 본질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의문사 중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박창수 열사 사건을 보자. 노태우 정권은 한진중공업노동조합이 전노협에서 탈퇴하도록 하기 위해 박창수위원장을 구속하여 옥에 가두는 것도 모자라서 온갖 수단과 공작을 동원하여 박창수 열사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노동자탄압을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공작을 동원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자를 자르기 위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검찰이 진두지휘하여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난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과 같은 공작 적인 노동자 탄압이 박창수 열사 사건과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정경식, 문용섭, 오범근 열사 사건은 모두 회사가 구사대 혹은 깡패를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정황 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들인데 사전적이든 사후적이든 공권력은 철저히 이를 비호하였다. 사주들이 구사대나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노동자를 탄압하고 공권력은 시종일관 이를 비호하는 이러한 작태 또한 현재 전혀 변함이 없다.

2001년도 울산효성과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사제 총과 쇠파이프 등을 든 용역깡패를 투입하거나 2002년 경희대 투쟁에서처럼 구사대를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무참히 짓밟은 사주들은 버젓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활보하는데 노동자들만 줄줄이 구속, 해고되는 이 현실이 과거 열사들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현실과 얼마나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가 ?

정권이 바뀌고 법제도가 바뀌고 노동자들의 정치적 조직적 역량이 상당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일어난 이러한 전근대적인 일들이 되풀이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당시의 가해기관과 가해자들이 아무런 역사적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의문사를 조장하고 은폐하고 비호한 안기부, 국군기무사, 검찰, 경찰은 아무런 역사적 대가를 치르지 않았고 관련자들은 승진을 해서 버젓이 더욱 힘있는 자리에 앉아서 진상조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자를 죽인 사주들도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가 현재에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면 그것은 실로 안이하고 낭만적인 발상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의문사 진상규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제반 투쟁 즉 가해기관과 가해자의 방해와 비협조와의 투쟁, 진상규명위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개정 투쟁이 과거와의 투쟁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현실과의 투쟁 그 자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진상규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재의 투쟁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의미있는 돌파구를 만들지 않는 한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정권과 자본의 현재와 같은 탄압은 계속적으로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는 상태, 가해기관과 가해자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의문사 진상규명문제를 매듭지으려는 현 정권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이를 패배적으로 수용하려는 듯한 운동내부의 일부 경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우려를 가진다. 이것은 열사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으나 민주노총은 임원을 팀장으로 하는 '의문사 진상규명팀'을 만듦과 함께 급박하게 아래와 같은 사업과 투쟁들을 전개해왔다.

첫째, 의문사 노동자 사인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진상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안기부, 검찰, 기무사에 대한 타격 투쟁을 전개하고, 둘째,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의문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교육 선전사업, 셋째, 조사기간 삭

제와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문사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대국민여론화 및 법개정 투쟁 등을 전개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는 진상조사사업은 일정한 역사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진상규명위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진상조사사업을 진상규명의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시점에서 향후 진상규명 사업과 투쟁을 민간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새로운 민간주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판단한다. 물론 그것은 현재의 투쟁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 의문사한 노동열사 현황

□ 전두환 정권 하

신 호 수 (당시 23세)

신호수 동지는 1986년 6월 11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시 남구 소재 도화가스 충전소에 파견되어 가스통 밸브작업을 하고 있던 중 서울시경 대공수사과 형사라고 신분을 밝힌 3명의 남자에 의해 연행된 이후 소식이 끊겼다가 8일만인 19일 10시경, 3명의 방위병에 의해 고향집으로부터 불과 4km거리인 전남 여천군 대미산 중턱의 한 동굴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동지가 방위근무할 때 장판 밑에 모아둔 북한의 삐라를 문제삼아 대간첩작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장흥공작"이라고 명명하고 동지를 연행한 것이 국회에 제출된 국정감사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사건 당시 여수경찰서는 가족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형사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사건을 추정하고 변사사건으로 처리해 버렸다. 게다가 1986년 6월 21일, 발견 이틀만에 전남 여천군 돌산읍 평사리 공동묘지에 가매장하고 6월 27일에야 가족에게 통보했다.

심 재 환 (당시 25세)

1962년에 태어나 서울대에 입학하여 학생운동에 투신 인문대 학생회장을 지냈고, 부평 삼화정밀에 입사하여 노동운동 중 87년 12월 16일 대통령선거일에 자취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육체적으로 매우 건강하고 의욕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해 왔고, 당시는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탄압이 강화된 시기였으며, 학생출신 노동운동가에 대한 미행, 협박, 불법연행 등이 만연된 상황이었으므로 사망원인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된다.

□ 노태우정권하

정 경 식 (당시 29세)

84년 대우중공업 창원공장에 입사한 정경식 동지는 3년 동안 받은 월급으로 8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저축할 정도로 검소하고, 생활력이 강했으며 동료 노동자들과의 관계도 대단히 원만하였다. 동지는 노동자로서의 의식도 투철했는데 86년 5월에 공장에서 일을 하다 팔을 다쳐 4개월 정도 입원해 있었을 때, 문병 온 동료들에게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특히 젊은 층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87년 5월 노

동조합지부장 선거에 참여하면서 민주 노동조합을 건설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조합 건설을 반대하는 후보들과 다툼이 있은 후 실종되었다가 88년 3월 창원 불모산에서 유골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동지의 죽음을 비관자살로 마무리지었으나,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현실의 벽을 허물려고 봇물처럼 터져 나온 노동조합 민주화의 물길을 막기 위해 노동자의 죽음을 은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아들의 죽음에 동지의 어머니는 장례식을 거부한 채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다.

오 범 근

오범근 동지는 산재 이후 호봉도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야간 경비근무 중 옥상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 힘을 지탱하지 못하고 떨어져 골수염으로 무릎뼈를 깎는 수술을 하는 등 노동력을 상실하였으나,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자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88년 3월 7일, "사직강요, 해고 위협, 어용노조 물러가라", "25% 임금인상, 학자금, 가족수당 쟁취하자"는 요구를 내걸고 파업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구사대의 잔인한 폭력으로 해산되자 동지는 3월 10일 새벽 회사로 출근해 같이 근무하는 수위들을 만나 폭력해산의 부당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회사측의 호출을 받자, 항의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4층 관리자실로 올라갔다. 그러나 이후 동지는 음독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그 죽음의 이유를 알 수 없이 같은 날 10시20분경에 운명했다. 3월 20일 새벽 5시 30분 동지의 시신은 400여명의 전경이 겹겹이 에워싼 가운데 병원에서 고향으로 옮겨졌다.

박 창 수 (당시 33세)

81년 5월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배관공으로 입사하여, 현장에서 도시락투쟁을 벌

이기도 하였다. 87년부터 노동조합운동에 헌신하였던 박창수 동지는 28년 동안의 어용노동조합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90년 7월 한진중공업에 민주 노동조합을 탄생시키며 전노협과 대기업 노동조합연대회의에서 중심적인 활동을 해왔다. 동지는 대우조선의 파업 관계로 긴급 소집된 대기업 노동조합연대회의에 참석했다가 제3자 개입금지와 집시법 위반으로 91년 2월초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동지는 임기 중에도 안기부 직원으로부터 끊임없이 전노협 탈퇴를 종용 당하였으며, 안양구치소 수감 중에도 신원미상의 몇 명과 같은 방에서 생활을 하며 계속적으로 안기부의 압력을 받아왔으며 5월 4일 의문의 상처를 입고 안양병원에 입원하였고 5월 6일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문 용 섭

문용섭 동지는 가난하게 살아 왔으면서도 의롭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86년 10월 서울광무택시에 입사하여 회사 관리자들에게 바른 말을 잘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동료들에게는 부담을 지우려 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 회사 과장들이 힘없는 기사들에게 각종 구실로 돈을 뜯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이 사실을 낱낱이 자신의 수첩에 기록하여 폭로함으로써 회사의 비리를 바로잡겠다고 별러 왔다. 사건이 발생하던 날, 문용섭 동지는 일을 나가지 않고, 1,000원을 입금으로 잡아놓고 노용운 과장에게 '노부장과 회사의 비리를 밝힐 수 있게 2주일간의 휴가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한편 이날 회사 부장과 동지는 회사 비리와 문 동지를 해고시킨다는 소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말다툼이 시작되어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회사측 사람의 공격에 의해 뒤로 쓰러지면서 포장마차 문 밖 보도로 쓰러져 뒷머리를 보도에 부딪혀 실신, 병원으로 옮겼으나 두 개골 골절상으로 88년 6월 9일 구사대의 폭행으로 운명하였다.